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2. 7 선고 2023나618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2. 7 선고 2023나61804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6. 21 선고 2022가단21806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

담당변호사 김찬성, 정치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하은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변론종결 2023. 11. 9.

판결선고 2023. 12. 7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6. 21. 선고 2022가단218060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1)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2. 28. 체결된 증여계약을 46,116,2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2) 피고 B은 원고에게 46,116,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1)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851분의 530지분 및 별지2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2. 28.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2) 피고 C은 D에게,

가)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851분의 530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21. 1. 18. 접수 제35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,

나) 별지2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. 1. 18. 접수 제74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,
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,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송승용, 판사 양형권, 판사 이민수

별지